

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
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채인묵, 김정태,  
임종국, 이호대, 이태성,  
강동길, 이정인, 정재웅,  
이승미 의원 (10명)

## 1. 제안 이유

-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,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와 그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점포 중 수백 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이 국가적·사회적 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.
-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줘야 하며, 현 시대 최고의 ‘공공의 선’은 단연 ‘일자리’임. 이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창업

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게 하여 의지가 있고 재능 있는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지원,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서울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5조제3항)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
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청년창업 지원 사업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.</u></p>